

희망퇴직에 관한 규정

2016.08.01. 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(이하 본교) 교직원의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자) 희망퇴직의 대상자는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, 과장대우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.

제3조(희망퇴직의 제한) ①희망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희망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
1.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
2.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
3.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희망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②총장은 인력수급계획, 예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희망퇴직의 허가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4조(희망퇴직수당지급액)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한다) 지급액은 퇴직당시 보수월액의 18개월치를 지급하며 보수월액은 연봉계약서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을 말한다.

제5조(희망퇴직의 실시 회수 및 시기) 희망퇴직의 회수와 시기는 본교의 사정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.

제6조(희망퇴직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선정결과 통지) ①총장은 희망퇴직을 신청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규정 제3조 및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한다.

②희망퇴직 대상자가 결정되면 총장은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.

③희망퇴직원은 사직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제7조(수당의 수령권자) 수당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정하는 급여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.

제8조(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) 수당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제1호 서식>

희 망 퇴 직 원

소 속:

직 급:

성 명:

퇴직일:

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 퇴직코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

위 원 인 (인)

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총장 귀하